

●환경부고시제2016-3호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「2016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」을 고시 합니다

2016년 1월 13일

환 경 부 장 관

2016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

I. 추진배경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」(‘16~’20)에 따른 ‘16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

추진 근거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」
 - (5년)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
 - (매년)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

II. 2016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

□ 전기자동차

- (사업예산) 전기차 8천대 1,048억원, 충전시설 8,050기 421억원
- (지원금액) 전기차 1,200만원/대, 전기버스 1억원/대
 - 완속충전기 400만원/기 또는 이동형충전기 80만원/기
- (세금감정) 개별소비세, 취득세 등 최대 400만원 감경,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
- (지원대상)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한 법인·단체, 기업체 및 일반국민 등
- (대상차종)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5-26호, 2015.3.3)을 만족하는 차량

< 201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>

제작사	기아	르노삼성	한국GM	BMW	기아	닛산	파워프라자
차량명	RAY	SM3	SPARK	i3	SOUL	LEAF	라보 PEACE
최고속도	130km/h	135km/h	145km/h	150km/h	145km/h	140km/h	95km/h
주행거리	상온	91km	135km	135km	132km	148km	132km
	저온	69.3km	83.5km	83km	75.5km	123.7km	85.5km
충전시간	완속	6시간	3~4시간	6~8시간	3~5시간	4~5시간	5시간
	급속	25분	30분	20분	30분	25분	40분
배터리	16.4kWh	26.6kWh	21.4kWh	21.3kWh	27kWh	24kWh	17.8kWh

*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의 변경사항 발생시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

< 2016년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>

제작사	한국화이바	올레브	한국화이바
차량명	E-Primus	올레브	이-화이버드
승차인원	49인승	48인승	44인승
최고속도	100km/h	85km/h	76km/h
1회충전주행거리	69.8km	75.5km	83.6km
배터리	85.8kWh	98.2kWh	97.2kWh

□ 하이브리드자동차

- (사업예산) 하이브리드차 30,400대, 304억원
- (지원금액) 100만원/대
- (세금감경) 개별소비세, 취득세 등 최대 270만원 감경,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
- (지원대상) CO₂ 97g/km 이하 중·소형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
- (대상차종)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으로 공고한 차종

< 2016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>

제작사	차 종	배기량(cc)	연료	공차중량(kg)	CO ₂ 배출량(g/km)
현대자동차(주)	소나타 2.0GDI(16인치)	1,999	전기+무연휘발유	1,585	91
	소나타 2.0GDI(17인치)	1,999	전기+무연휘발유	1,595	95
	아이오닉 1.6GDI(15인치)	1,580	전기+무연휘발유	1,380	69
	아이오닉 1.6GDI(17인치)	1,580	전기+무연휘발유	1,410	78
기아자동차(주)	K5 2.0GDI(16인치)	1,999	전기+무연휘발유	1,580	90
	K5 2.0GDI(17인치)	1,999	전기+무연휘발유	1,600	94
한국토요타자동차(주)	프리우스(PRIUS)	1,798	전기+무연휘발유	1,397	77
	프리우스V(PRIUS V)	1,798	전기+무연휘발유	1,515	92
	렉서스 CT200h	1,798	전기+무연휘발유	1,455	91
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(유)	퓨전(Fusion Hybrid)	1,999	전기+무연휘발유	92	92

* CO₂ 배출량은 「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온실가스 시험방법(복합모드)을 적용한 것으로,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(국립환경과학원, 한국환경공단, 한국석유관리원, 자동차부품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교통안전공단)에서 측정한 값임

*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은 변경사항 발생시 관보에 추가 공고할 예정으로 대상차종은 해당 관보의 내용에 따름

□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

- (사업예산)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천대, 150억원
- (지원금액) 500만원/대
- (세금감경) 개별소비세, 취득세 등 최대 270만원 감경,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
- (지원대상) CO₂ 50g/km 이하 및 1회충전 주행거리 30k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형 플러그인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
- (대상차종)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으로 공고한 차종

< 2016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 차종 >

제작사	차 종	배기량(cc)	연료	CO ₂ 배출량(g/km)	1회충전주행거리(km)
현대자동차(주)	소나타 2.0GDI	1,999	전기+무연휘발유	29	44

* CO₂ 배출량은 「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온실가스 시험방법(복합모드)을 적용한 것으로,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(국립환경과학원, 한국환경공단, 한국석유관리원, 자동차부품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교통안전공단)에서 측정한 값임

* CO₂ 배출량 및 1회 충전주행거리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5-cycle 고정 복합모드 값임

*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은 변경사항 발생시 관보에 추가 공고할 예정으로 대상차종은 해당 관보의 내용에 따름

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

- (사업예산) 수소차 71대 19.5억원, 수소충전소 3기 45억원
- (지원금액) 수소차 대당 2,750만원, 수소충전소 1기당 15억원 보조
- (세금감경) 개별소비세, 취득세 등 세금감경 등 관계부처 협의예정
- (지원대상)
 - 수소차 : 지자체, 공공기관 및 법인
 - 수소충전소 : 지자체
- (대상차종) 현대자동차 투싼iX FCEV

☐ 천연가스 자동차

- (사업예산) CNG하이브리드버스 보급 및 충전소 설치 등 202억원
 - CNG 하이브리드버스 300대, CNG 버스 200대, CNG 청소차 51대, 충전소 7기
- (지원금액) 경유차와 천연가스차의 가격차액 일부 보조(국고와 지방비로 각각 50% 보조)
 - 차량별 세부 보조금 지원규모는 '16년도 천연가스자동차 가격 결정 이후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서 확정
- (지원대상) 천연가스자동차 구매 운수업체 및 지자체,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업체
- (대상차종)
 - 대형 및 중형 CNG버스, 저상 및 고상 CNG하이브리드버스
 - 대형(11톤급) 및 중형(5톤급) CNG청소차
- (충전소) 고정식 충전소 1기당 8억원 용자(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)
 - ※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용자업무 대행

III.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
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
- 「주차장법」에 의하여 지자체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그 밖에 환경부장관·지자체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* 지원근거 :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」 제28조제2항 및 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11조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16-7호

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

『골재채취법』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『골재채취법』 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(변경)고시 합니다.

2016년 1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: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
2.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: 한국수자원공사
3.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: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(EEZ)
(좌표 : 동경 128°20' ~ 128°25', 북위 34°10' ~ 34°12')
4.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: 10.96km² (4개광구)

5. 골재의 부존량

(단위 : 천 m³)

구 분	변경전		변경후	
	부존량	채취가능량	부존량	채취가능량
합 계	83,594	60,827	82,710	60,021

6.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: 총 57,150천 m³

☐ 변경 전

(단위 : 천 m³)

합계	'08년 9월~ '09년 8월	'09년 9월~ '10년 8월	'10년 9월~ '12년 12월	2013	2014	2015 1~8월	'15년 9월~ '16년 8월
53,750	5,453	6,140	10,845	9,274	8,802	6,636	6,600

☐ 변경 후

(단위 : 천 m³)

합계	'08년 9월~ '09년 8월	'09년 9월~ '10년 8월	'10년 9월~ '12년 12월	2013	2014	2015 1~8월	'15년 9월~ '16년 8월
57,150	5,453	6,140	10,845	9,274	8,802	6,636	10,000

7.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:

변경전	변경후
2008. 09월 ~ 2016. 2월(7년 6개월간)	2008. 09월 ~ 2016. 8월(8년간)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16-8호

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

「골재채취법」 제34조의2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『골재채취법』 제34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(변경) 고시합니다.

2016년 1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: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
2.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: 한국수자원공사
3.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: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(EEZ)

☐ 변경 없음

구분	위치		면적(km²)	비고
	위도	경도		
3H	34° 12' 00"	128° 23' 00"	2.74	
	34° 12' 00"	128° 24' 00"		
	34° 11' 00"	128° 24' 00"		
	34° 11' 00"	128° 23' 00"		
3I	34° 12' 00"	128° 24' 00"	2.74	
	34° 12' 00"	128° 25' 00"		
	34° 11' 00"	128° 25' 00"		
	34° 11' 00"	128° 24' 00"		
4E	34° 11' 00"	128° 20' 00"	2.74	
	34° 11' 00"	128° 21' 00"		
	34° 10' 00"	128° 21' 00"		
	34° 10' 00"	128° 20' 00"		
4G	34° 11' 00"	128° 22' 00"	2.74	
	34° 11' 00"	128° 23' 00"		
	34° 10' 00"	128° 23' 00"		
	34° 10' 00"	128° 22' 00"		